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04.17.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공급규칙' 이라 함)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해당지역에 2년 이상으로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 *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해외거주여부 판단 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불가
 - ②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평형무관)
 - * 재당첨제한기간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제한 기준 적용
 - ③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는 주택종류에 관계없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
3. 이상과 같이 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청약신청자들이 위 내용들을 숙지하고 청약신청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급규칙 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감정원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주무관 **이전욱** 행정사무관 **김진호** 주택기금과장 **황윤언** 전결 2020. 4. 17.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2963 (2020. 4. 1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43 팩스번호 044-201-5530 / bejw@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